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**발 의 자** : 이수경 의원외 3인

2. **개정이유**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)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
- 의무휴업일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, 성주전통시장(5일장)날인 2일, 17일로 한다. 다만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월(月)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한편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.

○ 다만,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,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해

○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‘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’로 하고, 제2조에 적용례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’로 명시함.

4. 관련법령

가. 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의2

5. 검토보고

○ 제안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

-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여 종사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
- 의무휴업일수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고, 날자는 성주전통시장(5일장)날인 2일, 17일로 정하며, 다만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월(月)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로서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